#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안)

안 건 번 호 1

발의연월일: 2020. 8. 제 안 자: 학교장 담 당 자: 김선희

#### 1. 제안이유

코로나 19의 전파로 인해 2020학년도 학년별 2학기 현장체험학습, 4-5학년 수련활동 및 6학년 테마식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

#### 2. 심의 내용

가.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2학기 현장체험학습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어 외부 활동을 내실 있는 교실 활동, 또는 원격 수업 등으로 대체함.

나. 교육청 예산의 지원을 받는 6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이후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된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1일 체험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2020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변경 계획(안)

안 건 번 호 2

발의연월일: 2020. 8. 제 안 자: 학교장 담 당 자: 윤인정

####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2020학년도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계획 변경

나. 학교교육과-11799(2020.8.19.)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하여 42일 감축 ※법 제31조 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 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59일 이내 감축 가능)

### 2. 심의내용

## 가. 학사일정

학	기 별			1	학	7	1				2	ō	<u> </u>									
월	별 수	3	4	5	6	7	8	소계	9	10	11	12	1	2	소계	합계						
일		31	30	31	30	31	31	184	30	31	30	31	31	28	181	365						
	토요일	4	4	5	3	4	1(3)	21(23)	4	5	4	3	0(5)	0(1)	16(22)	37(45)						
	일요일	4	4	5	4	4	1(3)	22(24)	4	4	5	3	0(5)	0(2)	16(23)	38(47)						
	공휴일	1	2	1	1		1	6	1	3		1	1	3	9	15(15)						
휴업	코로나휴업	22	20	17				59					-		0	59(59)						
휴업 일수	방 학						22(8)	22(8)				6	30(0)	21/20 (10)	57/56 (10)	79/78 (24)						
	계	31	30	28	8	8	25(15)	130 (120)	9	12	9	13	31(11)	24/23 (16)	98/97 (70)	228/ 227 (190)						
수'	업일수	0	0	3	22	23	6	54	21	19	21	18	0	4/5	83/84	137/ 138						
방괴 (학년	  후 과정  말 포함)	0	0	3	22	23	16	64	21	19	21	22	20	12	111	175						
	공휴일 (토,일,방학 제외)						l/15.수), 부처님 오신날(4/30.목), 어린이날(5/5.화) ~10.2.수~금), 한글날(10/9.금), 성탄절(12/25.금), 신정(1/1,금)															
			여 름	방 학		◆ 2020.08.01.(토) - 2020.08.23.(일) (23일간)																
	방 학	겨울방학				<b>♦</b> :	◆ 2021.12.25.(금) - 2021.01.31.(일) (38일간)															
			학년말	날방학		◆ 2021.02.06.(토) - 2021.02.28.(일) (13일간)																
비			입	학		•	2020.03	3.02.(월)														
					방학식			2020.07														
고		여름병	방학 중		화정			3.03.(월)	- 202	20.08.	.14(금	(10일	!간)									
				학 식			2020.08															
	참 고			방학식				2.24.(목)														
		겨울병	방학 중		화정			.04.(월)	- 202	21.01.	.29.(글	<u>ት</u> ) (20'	일간)									
			개 호				2021.02															
				및 졸업				2021.02														
		학	학년말 방과후과정 ◆ 2021.02.08.(월) - 2021.02.19.(금) (8일간)																			

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중식방안: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아학비에서 매식(개별도시락)으로 지원한다.

## 다. 연간 교육과정 운영 일수 책정표

## 1) 2020학년도 1학기

월			3			4			5		6		7			8			
일 행사	여행		행사		요 일	행시	ŀ	요일	행시	ŀ	요 일	행시	ŀ	요일	행시	ŀ	요일	행시	ŀ
1	일		삼일절		수			TI II			월			수			토		
2	월		입학		목			토			화			목	유아 숲	체험	일		
3	화				TIO .			즬			수			ΠO			월병	방과후과	정시작
4	수				토			월			목			토			화		
5	목				일			화	어린이	날	己			일			수	문화처	l험
6	UI II	개	교기별	념일	월			수			토	현충	일	월	소방훈	련	목		
7	톼				화			목			뎰			화운	구강교 전자동승.	!육 자 교육	日		
8	일				수			급			월			수			토		
9	월				목			토			화 운전	전자동승:	자 교육	목			일		
10	화				do d			일			수			ПО			월		
11	수				토			월			목 :	화재안전	교육	토			화		
12	목				일			화			급			ᆒ			수	1학기 워	크숍
13	П				월			수			토			월			목		
14	토				화			목			일			화			금종	등 방과후교	·정마침
15	뎰				수 코	R회의원	선거	П			월			수			토	광복	절
16	월				목			토			화			목			일		
17	화				급			일			수			금힘	께하는 놀	01 Day	월		
18	수				토			월				어린( 명양,위생		토			화		
19	목				일			화				학기체격	검사	일			수		
20	급				월			수			토			월		_	목		
21	토				화			목			일			화	구강교	.육			
22	인 (				수			10			월			수			토		
23	월				목			토			화			목			일		
24	화				급 -			일			수			급			월	개힉 	· 
25	수				토			월			목		01.0	토			화		
26 27	유 10				일 월			화 수	등교 수	- CH	토	게하는 놀	U Day	에 애			수 목		
28	토				화			목	- 2.11 ⊤	-8	의			화	구강교	1유			
29	실				수						월			수	101		토		
30	월					처님 오	2신 날	토			화	구강교		목			일		
31	화					><		일						급	여름방혁	학식	월		
		수업 일수	휴일	계	수업 일수	휴일	계	수업 일수	휴일	계	수업 일수	휴일	계	수업 일수	휴일	계	수 일 실 수	휴일	 계
	_		0.1	0.1	$\vdash$	20	20		00	0.1	<del>                                     </del>		20			0.1			0.1
과	덩	0	31	31	0	30	30	3	28	31	22	8	30	23	8	31	6	25	31
방고 과:		0	31	31	0	30	30	3	28	31	22	8	30	23	8	31	16	15	31

## 2) 2020학년도 2학기

월		9	9			10			11		12				1			2		
일행사	요 일	č	행사		여 희	행,	<b>\</b> }	요 일	행사		요일		행사		요 일	행시	.ŀ	요 일	행시	ŀ
1	화				매	추	ধ	일			화				巾	신정	!	월	개호	it .
2	수				己	추석(		월			수				토			_	운전자동승.	자 교육
3	목				토	개천	선절	화			목	유	아 숲치	세험	일			수		
4	급	소방	안전고	교육	일			수	도자기만	들기	금					과후과	정시작	목	수료	
5	토				월	0=1=1=		목			토				화			급	졸업식	<u> </u>
6	<u>일</u> 월					운전자동성	하나 교육	급 ; 토	제육놀이한	반당	일				수 목			토일		
		운전자	도스지	. 교유	수 목	졸업단	네사지	일			_	우저 7	자승공사	. 교유	금			월	방과후과?	 정 시 자
9	수	CCAR	00/1	ш-	П	한글		월			수		100/ !내놀이		토			화	84746	5/17
10	· 목				토				전자동승지	나 교육	목		-11 = +1		일			수		
11	급				일			수			금	함까	l하는 Day	놀이 /	월			목	설연회	ē
12	토				월	개별면임	t(~23)	목			토				화			급	설	
13	일				화			己			일				수			토 설연휴		
14	월				수		토			월				목			일			
15	화				목		일			화				급			월			
16	수	농촌진			币		월		수				토			화				
17	목	승강기	안전	교육	토		화		목			일			수					
18	급				I I			수 목			-	2학기	워크숍	i(~19)	월			목	바기둥기	디디카
19	토일				월 화			프			토일				화 수			급	방과후과정	상마심
21	월				수	어린 영양,위	이 교으	토			월				목			밀		
22	화				목	유아 숲		9			화	화 급					월			
23	수	학부5	2 참관	반수업	il il	함께하는	돌이 av	월		수			토			화				
24	목				토			화 스마트폰교육		목 산타행사및방학식		일			수					
25	品	함께	하는 Day		일			수		금 성탄절		월			목					
26	토				월			목		토			화			日				
27	일				화				함께하는 Day		일			수			토			
28	월				수	석교1일	체험	토			월			목			일			
29	화				목	2학기 처	격검사	일			화	신입	오리엔E	레이션	금 방	과후과정	정 마침		>><	
30	수	추	석연휴	10+	П	몸튼건강	증진의 날	월			수				토				>	
31		$\overline{}$	=		토				><		목				일					$\overline{}$
		수업 일수	휴일	Я	수' 일:	업 휴일	ıЯ	수업 일수	휴일	계	수인	업 수	휴일	계	수업 일수	휴일	계	수인	큐일	 계
교9		21	9	30	19		31	21	9	30		8	13	31	0	31	31	4/5		28
과? 방괴	후	21	9	30	19		31	21	9	30			13	31	20	11	31	12		28
과경	ਰ S																			
¬.		2	학기			1약기(	20.3.	2.~2	0.8.31	)	2학기( 20.9.1.~21.2.28. )						계 			
겨 	수업일수				Ī	1육과경 방과	정: 5년 후: 6년	4일 4일				교육	과정: 방과 <sup>호</sup>	: 83/8 ≱: 11	84일 1일		빙	교육과정: 137/138일 방과후: 175일		

<sup>※ 2</sup>학기 행사 및 현장체험학습은 공문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2020학년도 전주서원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칙 개정(안)

안 건 번 호 3

발의연월일: 2020. 8. 제 안 자: 학교장 담 당 자: 최성준

### 1. 제안이유

## 가. 법적근거

- 1)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 나.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전주서원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미비된 사항을 전북교육청에서 보급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참고로 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 2. 관련근거: 내부결재

- 가. 전주서원초-11303(2019. 11. 4.)
  - 전주서원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나. 전주서원초-3396(2020. 4. 10.)
  - 전주서원초 교권 보호 추진계획(별도계획)
- 다. 전주서워초-3399(2020. 4. 10.)
  - 전주서원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라. 교원인사과-12336(2020. 7. 10.)
  - 학교운영위원회 필수 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 3. 주요내용

- 가. 전주서원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 나. 전주서원초 교권보호 추진 계획(별도계획)
- 붙임 전주서원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부. 끝.

# 전주서원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칙

## 전주서원초등학교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전주서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주서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전주서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 ②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되 교감,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교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 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 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8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 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 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0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 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 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

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 제1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 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학년도 5.6학년 보건교과서 변경(안)

안 건 번 호 4 발의연월일: 2020. 9. 제 안 자: 학교장 담 당 자: 조은 영

#### 1. 제안이유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 '생활속의 보건(2009개정/YBM)' 교과서를 2015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보건교과서 '함께하는 보건(2015개정/YBM)'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2. 근거

교육부 교과서정책과-1944(2020.5.15.)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현행화 추진」

#### 3. 주요내용

가. 현재 인정도서로 사용하는 모든 보건교과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며 12년동안 개정되지 않은 상태임.

나. 학생들이 시대상을 반영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2020년개정 승인함.

함께하는 보건교과서(5학년, 출판사 YBM) 함께하는 보건교과서(6학년, 출판사 YBM)

- 다. 기존의 교과서 내용에 담지 못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디지털 성폭력 예방, 경계 교육 및 그루밍 성폭력 예방 소아 당뇨, 기후변화 등을 담았음. 이는 2015 교육과정 취지와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반영되었음.
- 라.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보건교과서**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됨.
- 마. 이에 교과서 신청 전 보건교과서 변경을 안건으로 제출함.

구 분	교과서명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 생활 속의 보건(5.6학년, 출판사 YBM), 서울시 인정도서
변경할 교과서	*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하는 함께하는 보건(5.6학년, 출판사 YBM), 경기도 인정도서 5학년 인정번호 15-경기-51-초교-20-026,출판사 YBM 6학년 인정번호 15-경기-51-초교-20-027,출판사 YBM

# 2020학년도 학교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 건 번 호 5

발의연월일: 2020.09. 제 안 자: 학 교 장 담당부서: 행 정 실

## 1. 제안이유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목적사업비 교부 등으로 인한 세입재원규모의 변경을 계 상하고,
- 2020학년도 각 부서별로 불용예상 되거나 추가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금액단위 : 천원)

추경여	ᅨ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i>F</i>	4-B)	증	감율	비	고
	1,544,288	1,426,641	1	8.3				
	구	出	경정예산액	기정여	산액	증	감	비고
	1.교육비	특별회계이전수입	1,309,584	0,391	28	9,193		
세	2.기타이	 전수입	400		0		400	

	•			-	
	1.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309,584	1,020,391	289,193	
세	2.기타이전수입	400	0	400	
	3.학부모부담수입	204,030	377,185	-173,155	
	4.행정활동수입	5,571	4,362	1,209	
입	5.전년도 이월금	24,703	24,703	0	
	세 입 계	1,544,288	1,426,641	117,647	100
	1.인적자원운용	5,834	6,640	-806	
	2.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450,341	465,154	-14,813	
세	3.기본적교육활동	248,205	199,154	49,051	
^1	4.선택적교육활동	413,701	398,663	15,038	
출	5.교육활동지원	163,872	81,606	82,266	
己	6.학교일반운영	259,335	272,424	-13,089	
	7.학교 재무활동	3,000	3,000	0	
	세 출 계	1,544,288	1,426,641	117,647	100

붙임 2020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